

'92. 12. 9

제17회정기회제9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시
金石鍾의원질의답변서

固定資産 減價償却 關聯資料

— 金石鍾 議員 —

上水道事業本部

金石鍾議員님

質問

減價償却 計算의 法的根據와 計算方法의 基準에
對하여 說明 바랍니다.

答辯

減價償却의 法的根據

○ 地方公企業法 施行規則 第 9條 (減價償却) 및 第10條
(減價償却의 方法)에 依據 處理하고 있습니다.

— 有形 固定資產의 減價償却은 別표2에 定하는 바에 따라 定額法 또는 定律法에 依하고,

無形 固定資產의 減價償却은 定額法에 依한다.

※ 現行은 定額法으로 償却 (全國 共通)

計算方法 및 基準

○ 有形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을 基準으로 하고,

取得價額을 耐用年限으로 나누어 年度別 減價額을 算
出하고 있습니다.

※ 算出公式：
$$\frac{\text{取得價額}}{\text{耐用年數}} = \text{年度別 減價償却額}$$

別添：1. 關聯法 1部

2. 有形 固定資産の 耐用年數 一覽表

□ 歲出豫算

○ 科 目 : 700 - 710 - 718 - 718-1 減價 償却費

○ 豫算額 : 2,799,710千圓

○ 産出基礎

— 減價 償却費 (非現金)

| 區 分 | '93 固 定 資 産 | | | '93 減 價 償 却 費 | | | 耐 用 數 主 要 資 産 |
|-------------|--------------|--------------|------------|---------------|----------------|-----------|---------------------|
| | '91 移 越 額 | '92 増 加 額 | 計 | '91 移 越 額 | '92取得 減價償却費 | 計 | |
| 計 | 84,924,791 | 12,503,810 | 97,428,601 | 2,439,321 | 360,389 | 2,799,710 | |
| 建 物 | 4,447,564 | 274,454 | 4,722,018 | 177,902 | 5,489 | 183,391 | 50 年 |
| 構 築 物 | 69,417,532 | 11,147,140 | 80,564,672 | 1,735,438 | 278,678 | 2,014,116 | 30 年 |
| 機 械 裝 置 | 9,666,448 | 533,310 | 10,199,758 | 386,657 | 21,332 | 407,989 | 15 年 |
| 車 輛 運 搬 機 構 | 404,591 | 18,860 | 588,451 | 40,459 | 18,386 | 58,845 | 15 年 |
| 公 器 構 備 品 | 988,656 | 365,046 | 1,353,702 | 98,865 | 36,504 | 135,369 | 5 年 |

※ 別添 : 有形 固定資産の 耐用年數 一覽表 1部

・地方公企業法 (1969. 6. 30)
(法律 第2101號)

第32條 (現金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經費支出의 特例) ①管理者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現金의 支出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經費에 관하여는 豫算없이 그 발생된 經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金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經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1969. 12. 16)
(大統領令 제4455호)

제18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자산매각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의 사용시의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1970. 6. 26)
(內무부령 제82호)

제 9조 (감가상각)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사업년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각자산중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은 이를 환치자산으로 계리할 수 있다.

제10조 (감가상각의 방법) ①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치자산의 감가상각은 환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상각의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 별표 2호 >

유형고정자산의내용년수일람표

| 종 류 | 구조 및 용도 | 제 목 | 내용 년수 |
|-----|-----------------------------|--|----------|
|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 크리트조 | 1. 사무소 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 60년 |
| | | 2. 관광호텔(관광사업진흥법)로서 정부에 등록된 것 | 40 |
| | | 3.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극장, 영 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 | 50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 |
| | 4.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옥내 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 건물 | 50 |
| | 5. 변전소, 발전소, 공장창고, 정차장 및 차고용 건물 | 50 |
| | 가) 극약등을 사용하여 부식하기 쉬운 공장건물 | 35 |
| | 나) 창고사업의 사용건물 | 50 |
| | 다) 기타 | 55 |
| 연와석조및부록조 | 1. 사업소 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 50 |
| | 2. 여관, 호텔, 요리점, 대석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기숙사, 체육관 및 아파트용건물 | 45 |
| | 3.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옥내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건물 | 45 |
| | 4. 변전소, 발전소, 공장창고, 정차장 및 차고용건물 | |
|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 하기 쉬운 건물 | 30 |
| | 나)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 35 |
| | 다) 기타 | 40 |
| 철 골 조 | 1. 사무소 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의 건물 | 50 |
| | 2. 여관, 호텔, 요리점, 대석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기숙사 및 아파트 용건물 | 45 |
| | 3.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옥내스케이트장 및 공중욕탕등 건물 | 45 |
| | 4. 변전소, 발전소, 공장창고, 정차장 및 창고용건물 | 25 |
| | 가)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 | 25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하기 쉬운 건물 | |
| | 나)차고사업의 창고용건물 | 35 |
| | 다)기타 | 40 |
| 트 벽 조 | 1. 사무소 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 25 |
| | 2. 공장 및 창고용건물 | |
| | 가) 업지이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 | 10 |
| | 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 |
| | 나)기타 | 15 |
| 목 조 |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 25 |
| | 2. 여관, 호텔, 요리점, 대석극장, 영화관, | 23 |
| | 무도장, 병원, 학교, 기숙사, 체육관 | |
| | 및 아파트용건물 | |
| | 3.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및 어시장, 공중욕 | 23 |
| | 탕용건물 | |
| | 4.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 |
| | 및 창고용건물 | |
|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 | 15 |
| | 하기 쉬운 건물 | |
| | 나)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 15 |
| | 다) 기타 | 15 |
| 목골물탈조 |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의 건물 | 15 |
| | 2. 여관, 호텔, 요리점, 대석극장, 영화관, | 25 |
| | 무도장, 병원, 학교, 기숙사, 체육관 및 | |
| | 아파트용건물 | |
| | 3. 영화제작소, 스테이지 및 어시장 공중욕 | 20 |
| | 탕건물 | |
| | 4.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차장, | |
| | 창고용건물 | |
| | 가)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 | 8 |
| | 하기 쉬운 건물 |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구축물 | 수도용 또는 공업용 수도용 | 나)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 15 |
| | | 다) 기타 | 15 |
| | | 취수용의 것 | 40 |
| | | 도수설비 | 50 |
| | | 정수설비 | 60 |
| | | 배수설비 | 60 |
| | | 교량 | |
| | | 철근콘크리트조의 것 | 60 |
| | | 철골조의 것 | 48 |
| | | 목조의 것 | 18 |
| | | 배수관 | |
| | | 주철제의 것 | 40 |
| | | 기타의 것 | 25 |
| | | 배수관 부속설비 | |
| | | 연와제 | |
| |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의 것 | 80 |
| | | 연와조 또는 석조의 것 | 50 |
| | | 공조의 것 | 40 |
| | | 저수지 | 30 |
| | | 고가수조 | |
| | | 철근콘크리트조의 것 | 40 |
| | | 금속조의 것 | 20 |
| | | 목조의 것 | 10 |
| | | 전신전화선 | 30 |
| | | 기타 | |
| | | 철근콘크리트조의 것 | 60 |
| | | 콘크리트조 또는 연와조의 것 | 40 |
| | | 석조의 것 | 50 |
| | | 금속조의 것 | 45 |
| | | 목조의 것 | 15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포장도로 및 포장 노면 | 콘크리트바닥, 부록크바닥, 연와바닥 또는 돌바닥 | 15 |
| (가)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것 | 아스팔트바닥 | 10 |
| (전계의 것을 제외) | 안벽, 잔교, 방벽, 제방 방파제탑 상수도 수조 및 용수용댐 | 40 |
| (나) 콘크리트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 | 터널 | 40 |
| | 수도용 댐 | 40 |
| | 건도크 | 40 |
| | 하수도 및 연돌 | 35 |
| | 조선대, 제염용 침전지 및 오수처리 | 25 |
| | 기타 | 40 |
| | 망루 저수지 | 40 |
| (다) 영아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 | 안벽, 잔교, 방벽, 제방, 방파제 | 30 |
| | 터널, 상수도 및 수조 | |
| | 하수도 및 배수정화장치 | 15 |
| | 공업용 폐석사장 | 5 |
| | 기타 | 40 |
| (라) 석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 | 방벽, 제방, 방파제 및 터널 연돌 및 연도 | 40 |
| | 염소크로루스 후혼산등 심한 부식성가스의 영향을 받는 것 | 8 |
| | 기타 | 25 |
| (마) 토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 | 안벽, 잔교, 방벽, 제방 및 상수도 | 40 |
| | 하수도 | 35 |
| | 건도크 | 40 |
| | 기타 | 40 |
| (바) 토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 | 방벽, 제방, 방파제 | 30 |
| | 상수도 및 저수지 | 25 |
| | 하수도 | 15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종 류 | 구조 및 용도 | 제 목 | 내용 년수 | |
|-----------------------|------------------------------------|----------------------------------|---------------------|----|
| 기 계 및 장 치 | (바) 철 및 기타 금속의 것(전계 의 것을 제외) | 기타 | 30 | |
| | | 교 | 40 | |
| | | 조상교 및 강철 파안벽, 용수관 | 25 | |
| | | 주철관 | 30 | |
| | | 강철관 | 20 | |
| | | 수조 및 기타 제조 | | |
| | | 주철제의 것 | 25 | |
| | | 강철제의 것 | 15 | |
| | | 부도크 | 20 | |
| | | 조교, 연돌, 펌프, 우물 및 담벽 | 10 | |
| | | 기타 | 40 | |
| | | (사) 합성수지조 (전계의 것을 제 외) | | 10 |
| | | (아) 목조의 것 (전계의 것을 제 외) | 교탑 및 독크 | 15 |
| | | | 잔교, 안벽, 방벽, 제방, 방파제 | 10 |
| | | | 터널 및 수조 | 10 |
| | | | 가축 또는 가축사육장 | 8 |
| | | | 기타 | 15 |
| | | (자) 전계의 것 및 전계에 구분되 지 않는 것 | 주로 목제로 된 것 | 15 |
| | | | 기타 | 40 |
| | 수도용 또는 공업 용 수도용 설비 | 전기설비 | | |
| | | 기력 발전설비 | 15 | |
| | | 내연력 발전설비 | 15 | |
| | | 축전지 전원설비 | 6 | |
| | 기타 | 20 | | |
| | 펌프설비 | 15 | |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약품주입 설비 | 15 |
| | 멸균설비 | 10 |
| | 통신설비 | 9 |
| | 제축설비 | 10 |
| | 제량기 | |
| | 양수기 | 8 |
| | 기타제량기 | 10 |
| | 하역설비 | 15 |
| | 수선검사설비 | 15 |
| | 기타 | |
| | 주로 금속조의 것 | 17 |
| | 주로 목조의 것 | 8 |
| 통신설비(금전용 지령설비포함) | | 9 |
| 강재철도 또는 가 공 색도설비 | 강색 | 3 |
| 자동차수리용설비 | 기타 설비 | 12 |
| 수리공장 또는 공 작 공장용기계설 비(자동차수리용 의 것은 제외) | | 13 |
| 수력발전설비 | | 14 |
| 기력발전설비 | | 22 |
| 내연력 또는 가스 터빈발전설비 | | 15 |
| 축전지전원설비 | | 6 |
| 송전 또는 전기 | 수용자용계량 | 15 |
| 사업용변전 또는 배전설비 | 주상변압기 | 18 |
| 석유 또는 액화가 | 기타설비 | 22 |
| | | 13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차 량 및 운 반 구 | 스 이입판매설비 | | |
| | 가스사업용공급 | 가스도관 | |
| | 설비 | 주철제의 것 | 22 |
| | | 기타 | 13 |
| | | 수요자용 제량기 | 13 |
| | | 기타설비 | 15 |
| | 크리닝설비 | | 9 |
| | 급식용설비 | | 9 |
| | 전계의 기계 및 | 주로 금속제의 것 | 17 |
| | 장치 이외의 것과 | 기타의 것 | 8 |
| | 함께 전계의 구분 | | |
| | 에 의하지 않는 | | |
| | 것 | | |
| | (1) 철도용 또는 | 전차 또는 증기 기관차 | 15 |
| | 궤도용차량 | 전차 | 5 |
| | 내연자동차(제어차 및 부수차 포함) | 15 | |
| | 화차 | 15 | |
| | 강색철도용 차량 | 15 | |
| | 가공 색도용 반기 | 10 | |
| | 기타의 차량 | 15 | |
| (2) 특수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렌드겐차, 반수차, 방송선전 | 5 | |
| (차항에는 기계장 | 차, 이동무선차도-크리후트 모-터스 윗타 농 | | |
| 치 설치에 계기되 | 경작업용 색인차 및 제설차, 탱크차, 진애차, | | |
| 는 자주식작업용 | 참대차, 영구차 트럭믹샤 기타 특수차체로 조 | | |
| 기구는 포함되지 | 립된 것 | | |
| 않음) | | | |
| (3) 운송사업용 |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 포함) | 4 | |
| 대자동차 사업용 | 승합자동차 | 4 | |
| 또는 자동차 | 자전거 및 리야카 | 3 | |
| | 색인차 기타의 것 | 5 |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
| 선박 | 선박법 제4조 내 지 제19조의 적용 을 받는 강선 | (4) 전계의 것 이 외의 차량 및 운 반구 |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 포함) | 5 | |
| | | | 화물자동차 | 4 | |
| | | | 기타의 것 | 5 | |
| | | | 자전거 | | |
| | | | 광산용인차(鑛山用人車) 탄차, 광차 및 대차 | | |
| | | | 금속제의 것 | 6 | |
| | | | 기타의 것 | 4 | |
| | | | 도록크 | | |
| | | | 금속제의 것 | 5 | |
| | | | 기타의 것 | 4 | |
| | | | 기타 | | |
| | | | · 자주능력이 있는 것 | 6 | |
| | | | (1) 어선 | 총톤수 100톤이상의 것 | 10 |
| | | | | 원양선(포경선, 탐경선, 예경선, 참치선등) | |
| | | | | 기타의 것 | 12 |
| | | 총톤수 100톤미만의 것 | 8 | | |
| | | 원양선(포경선, 탐경선, 예경선, 참치선등) | | | |
| | | 기타의 것 | 10 | | |
| | (2)유조선 | | 15 | | |
| | (3)약품조선 | | 12 | | |
| | (4)기타 | | 18 | | |
| |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본선 | | | | |
| | (1)어선 | | 6 | | |
| | (2)약품조선 | | 8 | | |
| | (3)기타 | | 10 | | |
| | 전계 이외의 선박 | | | |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종 류 | 구조 및 용도 | 제 목 | 내용 년수 |
|-----------|----------------|------------------------|----------|
| 공 구 | (1) 강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선, 발전선 | 8 |
| | | 기타 | 12 |
| | (2) 목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선 | 5 |
| | | 동력어선 | 6 |
| | | 기타 | 8 |
| | (3) 기타 | 모터보트 포함 | 5 |
| | 측정공구 기타 검 | | 5 |
| | 사공구(전기 또는 | | |
| | 전자 이용하는 것 | | |
| | 포함) | | |
| | 치구 및 취부공구 | | 3 |
| | 형(형틀을 포함한 | 그밖에 금속가공용 금형, 합성수지, 고무 | |
| | 다)단 앞공구 기 | 또는 유리성형용 | |
| | 타 타발공구 | 사형 및 주조용형 | 2 |
| | | 기타 | 3 |
| 절삭공구 | | 2 | |
| 금속제주기타 | | 3 | |
| 전계의 것 | 백금노즐(No. Zzel) | 3 | |
| 이외의 것 | 그 밖의 것 | 3 | |
| 전계의 구분에 의 | 백금노즐 | 13 | |
| 하지 않는 것 |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 8 | |
| | 기타의 것 | 4 | |
| 기 구 | (1) 가구, 전기기 | 사무용 탁자, 의자 및 캐비닛 | 15 |
| 및 비 | 구, 가스기기 및 | 주로 금속제인 것 | |
| 품 | 가정용품(타항에 | 기타의 것 | 8 |
| | 계기되는 것 제 | 용접셋트 | 8 |
| | 외) | 침구 | 8 |
| | | 진열장 및 진열케스 | 8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 기타의 가구 | |
| | 주로 금속제인 것 | 15 |
| | 기타의 것 | 8 |
| | 라디오, 텔레비존, 테이프, 레코드 기타 의 음향기기 | 5 |
| | 냉방용 또는 난방용기기 | 8 |
| |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 8 |
| |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및 냉장고 및 냉장스톡카(전기식인 것은 제외) | 5 |
| | 자동판매기(수동의 것 포함) | 5 |
| | 커튼, 방석 침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3 |
| | 섬유제품, 용단 기타의 상용품, 접객업 용, 방송용, 레코드취입 또는 극장용 기타의 것 | 3 |
| | 실내장식품 | 6 |
| | 주로 금속제인 것 | 15 |
| | 기타의 것 | |
| | 식사 또는 주방용품 | 5 |
| |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것 | 2 |
| | 기타의 것 | 5 |
| | 주로 금속제인 것 | 15 |
| | 기타의 것 | 8 |
|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 사무용기기 | 5 |
| |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 10 |
| (3) 시계시험 및 측정기기 | 시계 | 10 |
| | 도량형기 | 6 |
| | 시험 또는 측정기기 | 3 |
| | 도자기제 또는 유리제의 것 | |
| | 주로 금속제의 것 | 10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종 류 | 구조 및 용도 | 제 목 | 내용 년수 |
|-----|----------------------|----------------------|----------|
| | | 기타의 것 | 5 |
| | (4)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 8 |
| | (5) 간판 및 광고 기기 | 간판 네온사인 및 기구 | 3 |
| | | 마네킹, 인형 및 모형 | 2 |
| | | 기타 | |
| | | 주로 금속제인 것 | 10 |
| | (6) 용기 및 금고 | 기타의 것 | 5 |
| | | 봄베 | |
| | | 용접제의 것 | 6 |
| | | 단조제의 것 | 8 |
| | | 드럼강 콘테이너 기타의 용기 | 3 |
| | | 금고 수제금고 | 6 |
| | | 기타의 것 | 20 |
| | (7) 이용 또는 미 용기기 | 이용 또는 미용의자 및 세면설비 | 8 |
| | | 드라이어 기타의 것 | 6 |
| | (8) 의료기기 | 렌드켄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 |
| | | 이동식인 것 | 4 |
| | | 기타의 것 | 6 |
| | |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 4 |
| | | 조제기기 | 6 |
| | | 치과 치료용 유닛트 | 8 |
| | | 광학적 검사기기 | 8 |
| | | 기타 | |
| | | 도자기 유리제의 것 | 3 |
| | | 주로 금속제의 것 | 10 |
| | | 기타의 것 | 5 |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 | |
|-------------|-----------------------|----|
| (9) 오락스포츠 | 당구용구 | 8 |
| 기기 또는 흥 | 바둑, 장기, 기타 이에 유사한 유희구 | 5 |
| 행 연극용구 | 스포츠용구 | 3 |
| | 극장용 관객의자 | 3 |
| | 막 | 5 |
| | 의상, 소도구, 대도구 | 2 |
| | 기타 | |
| | 주로 금속제의 것 | 2 |
| | 기타의 것 | 5 |
| (10) 생물 | 식물 | |
| | 대부업용의 것 | 2 |
| | 기타의 것 | 15 |
| | 동물 | |
| | 어류 | 2 |
| | 조류 | 4 |
| | 기타 | 8 |
| (11) 전계 이외의 | 장의 요구 | 3 |
| 것 및 전계의 | 기타 | |
| 구분에 의하 | 주로 금속제의 것 | 10 |
| 지 아니하는 것 | 기타의 것 | 5 |
| 전계하는 자산 가 | 주로 금속제의 것 | 15 |
| 운데 당해 자산에 | 기타의 것 | 8 |
| 관하여 정하여진 | | |
| 전계의 내용 연수 | | |
| 에 의하는 것 | | |
| 이외의 것 | | |

<주> 1. 다음 표 상란에 기재한 구축물 또는 기계 및 장치를 상각하는 경우의 내용
년수

제 1 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 구축물 또는 기계 및 장치 | 내용년수 |
|---|------|
| 수도용 또는 공업용 수도용, 구축물, 취수설비, 도수설비, 정수설비, 배수설비 및 교구 | 58 |
| 수도용 또는 공업용 수도용 구축물중 배수관 및 배수관 부속설비 | 38 |
| 수도용 또는 공업용 수도용 기계 및 장치중, 전기설비, 펌프 설비, 약품주입설비 및 멸균설비 | 16 |
| 가스정제 설비 | 15 |

2. 내용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취득후 내용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연도에 의한다.

<별표 제 3호>

무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 구 분 | 내용년수 |
|----------------|------|
| 수 리 권 | 15 |
| 특 허 권 | 10 |
| 영 업 권 | 5 |
| 차 지 권(지상권) | 5 |
| 전용축선 이용권 | 25 |
| 전기가스 공급설비 이용권 | 15 |
| 전신 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 20 |